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나82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나824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소13334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찬호, 성승락

변론종결 2022. 12. 15.

판결선고 2023. 2.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소13334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17,20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7. 26. 22: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교차로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피고 차량 전방에는 신호기가 따로 없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좌측 소로에서 원고 차량 전방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우측 소로로 들어가려 했으나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 끝부분에 서 있던 보행자 D과 E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D을 앞 범퍼 부분에 매달고 진행하면서 건물 앞 간판시설물을 충돌하여 D이 사망하고 E과 원고 차량 승객인 F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인데 원고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는 충격 5초 전에서 1초 전까지 시속 63~54km, 충격 시 속도는 시속 51km 정도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전에 비가 많이 내려 바닥이 많이 젖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인정한 G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피해자 중 F과 E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10% 상당액인 817,201원을 2021. 3. 24.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817,201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때까지도 원고 차량 진행 방향 1, 2차로 차량들이 정차하여 계속 대기 중이었으므로 신호변경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교차로 내부에 사고위험 요인이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더하여 전방 우측에 보행자 D과 E이 차도 끝부분으로 내려와 서 있는 것을 교차로에 도착하기 상당한 거리 전부터 미리 볼 수 있었고 비가 와서 노면이 많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안전에도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차량이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충돌 전후 양 차량과 보행자들의 동태,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10:90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